# 가경 아이파크 5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정정공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확산에 따른 견본주택 운영안내

- 가경 아이파크 5단지는 견본주택 관람을 대체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운영(http://hdc.i-park.com/gagyeong5)할 예정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 됩니다.
  * 공급계약 기간 내 당첨자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당첨자의 견본주택 방문 시 가능 날짜 및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043-239-7505)
  * 견본주택 방문은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만 입장이 가능하며 해당 날짜 및 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동반자 동행 불가/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소독 발판,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 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가경 아이파크 5단지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043-239-7505)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 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에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 ~ 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단, 방문 전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043-239-7505)로 연락하여 사전고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 입주자 포함) 자격 확인서류는 당첨자 발표 이후 별도로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본 서류는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의 자격확인 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관람일시 및 당첨자 계약체결을 위한 예약신청 안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운영하오니 견본주택 관람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hdc.i-park.com/gagyeong5)로 접속하여 관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는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구 분 | 사이버 견본주택 관람 | 정당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자격검증 및 사전서류 접수 | |
|---|---|---|---|
| | | 예약 신청 기간 | 서류제출 가능 기간 |
| 일 정 | 2020.12.18(금)~ | 2021.01.07(목)~2021.01.16(토) | 2021.01.08(금)~2021.01.17(일) |

※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고지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및 견본주택 내방 예약일정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알려드립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9.29.개정된(민영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12.18.**입니다.(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1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 가능하며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조정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당첨되실 경우 향후 7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table>
<tr><th colspan="2">당첨된 주택의 구분</th><th colspan="2">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th></tr>
<tr><td colspan="2">-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3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6호)</td><td colspan="2">10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td></tr>
<tr><td colspan="2">-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td><td colspan="2">7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td></tr>
<tr><td colspan="2">-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td><td colspan="2">5년간</td></tr>
<tr><td rowspan="4">-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td><td rowspan="2">과밀억제권역</td><td>85이하</td><td>5년</td></tr>
<tr><td>85초과</td><td>3년</td></tr>
<tr><td rowspan="2">그 외</td><td>85이하</td><td>3년</td></tr>
<tr><td>85초과</td><td>1년</td></tr>
</table>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18.)**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18.)**현재 해당건설지역(청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거나 연간183일을 초과하는 국외 체류기간은 국내거주로 불인정되나 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는 자는 1순위 기타 지역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2에 따라 "성년자"란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라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반 및 특별공급 모두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변경)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 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 가입자 → (변경)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01.0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다음과 같이 [구간① : 9억원 이하 50% / 구간② : 9억원 초과 30%]가 차등적용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내 중도금 대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지역(청주시) 거주자가 1순위 청약 시 기타지역에 신청하여 청약이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와 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처분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hdc.i-park.com/gagyeong5)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호(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 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조정지역인 청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조에 의거(2020.10.27. 시행) 조정지역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은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2020.6.19.시행]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에 포함되어,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1호 및 3호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으로 함) 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제한기간 |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1.01.07.)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금지.**<br>(다만, 그 기간이(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
|---|---|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3천만원 중 큰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중개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과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http://hdc.i-park.com/gagyeong5)로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 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는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구 분 | 특별공급<br>(일반(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 일반 1순위(해당) | 일반 1순위(기타) | 일반 2순위 | 당첨자발표 | 자격검증 서류제출<br>(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 | 계약체결 |
|---|---|---|---|---|---|---|---|
| **일 정** | **12.28(월)** | **12.29(화)** | **12.30(수)** | **12.31(목)** | **21.01.07(목)** | **21.01.08(금) ~ 01.17(일)** | **21.01.19(화) ~ 01.22(금)** |
| **방 법** | 인터넷 청약<br>(08:00 ~ 17:30) | 인터넷 청약<br>(08:00 ~ 17:30) | 인터넷 청약<br>(08:00 ~ 17:30) | 인터넷 청약<br>(08:00 ~ 17:30) | 개별조회<br>(청약Home 로그인후조회 가능) | 견본주택<br>(10:00~16:00) | 견본주택<br>(10:00~16:00) |
| **장 소** | ■ 사업주체 견본주택<br>■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PC : www.applyhome.co.kr<br>-스마트폰 청약홈앱<br>*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음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청약홈앱 | | | | ■ 견본주택<br>-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br>※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 가능<br>※ 사전서류검수 대상자에 대한 서류접수 방법은 별도공지 예정 | ■ 견본주택<br>-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가능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담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9.29.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와 관계법령이 상충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청주시 공동주택과 - 40708호(2020.12.1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633-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21~29층 8개동 총 92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383세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68세대(철거민 12세대 포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35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15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26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39세대]

▣ 입주시기 : 2023년 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세대)

|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 약식 표기 |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 | |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일반공급 세대수 |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 | | | |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소계 | | | | | 일반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 생애 최초 | 소계 | | | |
| 민영 주택 | 2020001362 | 01 | 084.8743 | 84A | 84.8743 | 24.2320 | 109.1063 | 50.7375 | 159.8438 | 47.0076 | 177 | 21 | 26 | 35 | 5 | 12 | 99 | 78 | 7 | '23년 02월 예정 |
| | | 02 | 084.7993 | 84A1 | 84.7993 | 24.5465 | 109.3458 | 50.6926 | 160.0384 | 46.9661 | 199 | 23 | 29 | 39 | 5 | 13 | 109 | 90 | 8 | |
| | | 03 | 084.8833 | 84B | 84.8833 | 24.5283 | 109.4116 | 50.7429 | 160.1545 | 47.0126 | 206 | 24 | 30 | 41 | 6 | 14 | 115 | 91 | 8 | |
| | | 04 | 101.5539 | 101 | 101.5539 | 28.8342 | 130.3881 | 60.7083 | 191.0964 | 56.2456 | 237 | - | 35 | - | 7 | - | 42 | 195 | 10 | |
| | | 05 | 116.9845 | 116 | 116.9845 | 31.9440 | 148.9285 | 69.9328 | 218.8613 | 64.7918 | 106 | - | 15 | - | 3 | - | 18 | 88 | 4 | |
| | 합 계 | | | | | | | | | | 925 | 68 | 135 | 115 | 26 | 39 | 383 | 542 | 37 |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주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아파트 전체의 대지지분은 근린생활시설 가상경계면적이 제외된 전체 대지면적을 각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한 것이며, 이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린 숫자로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0.3025 또는 ㎡÷3.3058)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표의 공급대상의 주택형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부대시설(주차장, 전기/기계실,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 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피트니스 등)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주택형 표시 안내 (단위: ㎡)

| 공고상(청약시)주택형 | 84.8743 | 84.7993 | 84.8833 | 101.5539 | 116.9845 | 비고 |
|---|---|---|---|---|---|---|
| 약식표기 | 84A | 84A1 | 84B | 101 | 116 |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주택형과 약식표기형을 비교 및 확인 후 청약신청하셔야 하며,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가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 타입 | 주택형 | 세대수 | 동별 (라인) | 층 (구분) | 해당 세대수 | 분양가격 | | | | 계약금(10%) | | 중도금 (60%) | | | | | | 잔금 (30%) |
|---|---|---|---|---|---|---|---|---|---|---|---|---|---|---|---|---|---|---|
| | | | | | | | | | | 1차 | 2차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
| | | | | | | | | |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층분양가 | 계약시 | 2021.02.17 | 2021.05.17 | 2021.9.16 | 2022.02.16 | 2022.06.16 | 2022.9.16 | 2022.11.17 | 입주지정일 |
| 84A | 84.8743 | 177 | 502동(3호)<br>504동(3,4호)<br>505동(3호)<br>506동(3호)<br>507동(3호)<br>508동(3호) | 1층 | 1 | 112,818,240 | 164,181,760 | | 277,000,000 | 10,000,000 | 17,700,000 | 27,700,000 | 27,700,000 | 27,700,000 | 27,700,000 | 27,700,000 | 27,700,000 | 83,100,000 |
| | | | | 2층 | 7 | 112,818,240 | 173,181,760 | | 286,000,000 | 10,000,000 | 18,600,000 | 28,600,000 | 28,600,000 | 28,600,000 | 28,600,000 | 28,600,000 | 28,600,000 | 85,800,000 |
| | | | | 3층 | 7 | 112,818,240 | 177,181,760 | | 290,000,000 | 10,000,000 | 19,000,000 | 29,000,000 | 29,000,000 | 29,000,000 | 29,000,000 | 29,000,000 | 29,000,000 | 87,000,000 |
| | | | | 4층 | 7 | 112,818,240 | 184,181,760 | | 297,000,000 | 10,000,000 | 19,700,000 | 29,700,000 | 29,700,000 | 29,700,000 | 29,700,000 | 29,700,000 | 29,700,000 | 89,100,000 |
| | | | | 5층 | 7 | 112,818,240 | 190,181,760 | | 303,000,000 | 10,000,000 | 20,300,000 | 30,300,000 | 30,300,000 | 30,300,000 | 30,300,000 | 30,300,000 | 30,300,000 | 90,900,000 |
| | | | | 6층이상 | 148 | 112,818,240 | 197,181,760 | | 310,000,000 | 10,000,000 | 21,000,000 | 31,000,000 | 31,000,000 | 31,000,000 | 31,000,000 | 31,000,000 | 31,000,000 | 93,000,000 |
| 84A1 | 84.7993 | 199 | 501동(4호)<br>502동(4호)<br>503동(4호)<br>504동(5호)<br>505동(1호)<br>506동(1호)<br>507동(1호)<br>508동(1호) | 1층 | 3 | 112,718,640 | 166,281,360 | | 279,000,000 | 10,000,000 | 17,900,000 | 27,900,000 | 27,900,000 | 27,900,000 | 27,900,000 | 27,900,000 | 27,900,000 | 83,700,000 |
| | | | | 2층 | 8 | 112,718,640 | 173,281,360 | | 286,000,000 | 10,000,000 | 18,600,000 | 28,600,000 | 28,600,000 | 28,600,000 | 28,600,000 | 28,600,000 | 28,600,000 | 85,800,000 |
| | | | | 3층 | 8 | 112,718,640 | 177,281,360 | | 290,000,000 | 10,000,000 | 19,000,000 | 29,000,000 | 29,000,000 | 29,000,000 | 29,000,000 | 29,000,000 | 29,000,000 | 87,000,000 |
| | | | | 4층 | 8 | 112,718,640 | 184,281,360 | | 297,000,000 | 10,000,000 | 19,700,000 | 29,700,000 | 29,700,000 | 29,700,000 | 29,700,000 | 29,700,000 | 29,700,000 | 89,100,000 |
| | | | | 5층 | 8 | 112,718,640 | 191,281,360 | | 304,000,000 | 10,000,000 | 20,400,000 | 30,400,000 | 30,400,000 | 30,400,000 | 30,400,000 | 30,400,000 | 30,400,000 | 91,200,000 |
| | | | | 6층이상 | 164 | 112,718,640 | 198,281,360 | | 311,000,000 | 10,000,000 | 21,100,000 | 31,100,000 | 31,100,000 | 31,100,000 | 31,100,000 | 31,100,000 | 31,100,000 | 93,300,000 |
| 84B | 84.8833 | 206 | 501동(3호)<br>502동(2호)<br>503동(3호)<br>504동(2호)<br>505동(2호)<br>506동(2호)<br>507동(2호)<br>508동(2호) | 1층 | 5 | 112,830,240 | 160,169,760 | | 273,000,000 | 10,000,000 | 17,300,000 | 27,300,000 | 27,300,000 | 27,300,000 | 27,300,000 | 27,300,000 | 27,300,000 | 81,900,000 |
| | | | | 2층 | 8 | 112,830,240 | 167,169,760 | | 280,000,000 | 10,000,000 | 18,000,000 | 28,000,000 | 28,000,000 | 28,000,000 | 28,000,000 | 28,000,000 | 28,000,000 | 84,000,000 |
| | | | | 3층 | 8 | 112,830,240 | 173,169,760 | | 286,000,000 | 10,000,000 | 18,600,000 | 28,600,000 | 28,600,000 | 28,600,000 | 28,600,000 | 28,600,000 | 28,600,000 | 85,800,000 |
| | | | | 4층 | 8 | 112,830,240 | 179,169,760 | | 292,000,000 | 10,000,000 | 19,200,000 | 29,200,000 | 29,200,000 | 29,200,000 | 29,200,000 | 29,200,000 | 29,200,000 | 87,600,000 |
| | | | | 5층 | 8 | 112,830,240 | 185,169,760 | | 298,000,000 | 10,000,000 | 19,800,000 | 29,800,000 | 29,800,000 | 29,800,000 | 29,800,000 | 29,800,000 | 29,800,000 | 89,400,000 |
| | | | | 6층이상 | 169 | 112,830,240 | 192,169,760 | | 305,000,000 | 10,000,000 | 20,500,000 | 30,500,000 | 30,500,000 | 30,500,000 | 30,500,000 | 30,500,000 | 30,500,000 | 91,500,000 |
| 101 | 101.5539 | 237 | 502동(1호)<br>504동(1호)<br>505동(4,5호)<br>506동(4,5호)<br>507동(4,5호)<br>508동(4,5호) | 1층 | 10 | 134,989,440 | 175,464,145 | 17,546,415 | 328,000,000 | 10,000,000 | 22,800,000 | 32,800,000 | 32,800,000 | 32,800,000 | 32,800,000 | 32,800,000 | 32,800,000 | 98,400,000 |
| | | | | 2층 | 10 | 134,989,440 | 181,827,782 | 18,182,778 | 335,000,000 | 10,000,000 | 23,500,000 | 33,500,000 | 33,500,000 | 33,500,000 | 33,500,000 | 33,500,000 | 33,500,000 | 100,500,000 |
| | | | | 3층 | 10 | 134,989,440 | 189,100,509 | 18,910,051 | 343,000,000 | 10,000,000 | 24,300,000 | 34,300,000 | 34,300,000 | 34,300,000 | 34,300,000 | 34,300,000 | 34,300,000 | 102,900,000 |
| | | | | 4층 | 10 | 134,989,440 | 195,464,145 | 19,546,415 | 350,000,000 | 10,000,000 | 25,000,000 | 35,000,000 | 35,000,000 | 35,000,000 | 35,000,000 | 35,000,000 | 35,000,000 | 105,000,000 |
| | | | | 5층 | 10 | 134,989,440 | 202,736,873 | 20,273,687 | 358,000,000 | 10,000,000 | 25,800,000 | 35,800,000 | 35,800,000 | 35,800,000 | 35,800,000 | 35,800,000 | 35,800,000 | 107,400,000 |
| | | | | 6층이상 | 187 | 134,989,440 | 210,009,600 | 21,000,960 | 366,000,000 | 10,000,000 | 26,600,000 | 36,600,000 | 36,600,000 | 36,600,000 | 36,600,000 | 36,600,000 | 36,600,000 | 109,800,000 |
| 116 | 116.9845 | 106 | 501동(1,2호)<br>503동(1,2호) | 1층 | 4 | 155,500,320 | 200,454,255 | 20,045,425 | 376,000,000 | 10,000,000 | 2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112,800,000 |
| | | | | 2층 | 4 | 155,500,320 | 209,545,164 | 20,954,516 | 386,000,000 | 10,000,000 | 2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115,800,000 |
| | | | | 3층 | 4 | 155,500,320 | 216,817,891 | 21,681,789 | 394,000,000 | 10,000,000 | 29,400,000 | 39,400,000 | 39,400,000 | 39,400,000 | 39,400,000 | 39,400,000 | 39,400,000 | 118,200,000 |
| | | | | 4층 | 4 | 155,500,320 | 223,181,527 | 22,318,153 | 401,000,000 | 10,000,000 | 30,100,000 | 40,100,000 | 40,100,000 | 40,100,000 | 40,100,000 | 40,100,000 | 40,100,000 | 120,300,000 |
| | | | | 5층 | 4 | 155,500,320 | 232,272,436 | 23,227,244 | 411,000,000 | 10,000,000 | 31,100,000 | 41,100,000 | 41,100,000 | 41,100,000 | 41,100,000 | 41,100,000 | 41,100,000 | 123,300,000 |
| | | | | 6층이상 | 86 | 155,500,320 | 239,545,164 | 23,954,516 | 419,000,000 | 10,000,000 | 3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41,900,000 | 125,700,000 |

※ 분양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분양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통 유의사항**

- 2009.4.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기 바람.
-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상기 분양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되어 있음.
- 상기 분양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에어컨 등)이 미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품목은 통합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계약자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되,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전체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본 공고 중도금대출 유의사항 참조, 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주체가 별도로 분양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분양대금 납부시기, 중도금 대출신청 및 발생일자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 홍보물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길 바람.

##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구분 | | 84A | 84A1 | 84B | 101 | 116 | 합계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전용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이내] |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접수 | 5 | 5 | 6 | - | - | 16 |
| | 장애인 | 5 | 5 | 5 | - | - | 15 |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3 | 4 | 4 | - | - | 11 |
| | 중소기업 근로자 | 4 | 5 | 5 | - | - | 14 |
| | 철거민 | 4 | 4 | 4 | - | - | 12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전체공급세대수의 15%이내] | | 26 | 29 | 30 | 35 | 15 | 135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체공급세대수의20%이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우선공급(75%)] | 27 | 30 | 31 | | | 88 |
|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맞벌이 130% 이하) [일반공급(25%)] | 8 | 9 | 10 | | | 27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체 공급세대수의 3%] | | 5 | 5 | 6 | 7 | 3 | 26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용85㎡ 이하 공급세대수의 7%이내] | | 12 | 13 | 14 | - | - | 39 |
| 합계 | | 99 | 109 | 115 | 42 | 18 | 383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및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단, 일반공급하는 주택가격이 6억원이상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의 130%이하인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이하)에게 공급합니다.

### ▣ 특별공급 청약신청 및 당첨자 선정일시·장소

| 구 분 | 일 시 | 장 소 |
|---|---|---|
| **특별공급 신청** | 2020.12.28(월) / 08:00 ~ 17:30<br>(견본주택 : 10:00~14:00) |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PC. 모바일 신청가능)<br>(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청약홈 앱)<br>*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음 |
| **특별공급 당첨자선정 및 당첨 동호수 발표** | 2021.01.07.(목) |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 **1회 한정/**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

<table>
<tr><td>자격요건/<br>자격제한</td><td>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br>•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 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td></tr>
<tr><td>무주택<br>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br>※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br>-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br>-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br>※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br>가. 주택공급신청자<br>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br>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br>예) 부·모,장인·장모,시부·시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등<br>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br>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br>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전혼자녀 등</td></tr>
<tr><td>청약자격<br>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br>-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br>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br>-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br>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br>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br>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br>※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br>「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10조 제1항 관련)
<table>
<tr><th>구 분</th><th>청주시,충청북도<br>(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00만원</td><td>25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300만원</td><td>400만원</td><td>6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400만원</td><td>700만원</td><td>1,0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500만원</td><td>1,000만원</td><td>1,500만원</td></tr>
</table></td></tr>
</table>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68세대**

| 구분 | | 84A | 84A1 | 84B | 101 | 116 | 합계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접수 | 5 | 5 | 6 | - | - | 16 |
| | 장애인 | 5 | 5 | 5 | - | - | 15 |

| | | | | | | | |
|---|---|---|---|---|---|---|---|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3 | 4 | 4 | - | - | 11 |
| | 중소기업 근로자 | 4 | 5 | 5 | - | - | 14 |
| | 철거민 | 4 | 4 | 4 | - | - | 12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및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추천기관

| 구분 | 청약통장 구비여부 | 해당기관 |
|---|---|---|
| 국가유공자 등 | 청약통장 필요 없음 | 충북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 철거민 | 청약통장 필요 없음 | 사업주체 |
| 장애인 | 청약통장 필요 없음 |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 청주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
| 중소기업 근로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 '국가유공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2호의2(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3호(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제4호(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5호(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6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5% 이내) : 135세대**

| 구 분 | 84A | 84A1 | 84B | 101 | 116 | 합계 |
|---|---|---|---|---|---|---|
| 다자녀 특별공급 | 26 | 29 | 30 | 35 | 15 | 135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임신의 경우 서류 제출 시 임신 관련 자료(임신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허위임신 등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임신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소형 ·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한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br>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br>*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2):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4):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5):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될 경우 본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 115세대**

| 구분 | | | 84A | 84A1 | 84B | 101 | 116 | 합계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기준 | 우선공급(75%) | 27 | 30 | 31 | - | - | 88 |
| | | 일반공급(25%) | 8 | 9 | 10 | - | - | 27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및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분양권 전매 요청 시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자녀수 산정 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소형 ·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타 본 공고상에 자세한 사항 및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자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1년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1년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19년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0.2.20. 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 공급유형 | | 구분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5,554,983원 | 6,226,342원 | 6,938,354원 | 7,594,083원 | 8,249,812원 | 8,905,541원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6,665,980원 | 7,471,610원 | 8,326,025원 | 9,112,900원 | 9,899,774원 | 10,686,649원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120%이하 | 5,554,984원 ~ 6,665,980원 | 6,226,343원 ~ 7,471,610원 | 6,938,355원 ~ 8,326,025원 | 7,594,084원 ~ 9,112,900원 | 8,249,813원 ~ 9,899,774원 | 8,905,542원 ~ 10,686,649원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130%이하 | 6,665,981원 ~ 7,221,478원 | 7,471,611원 ~ 8,094,245원 | 8,326,026원 ~ 9,019,860원 | 9,112,901원 ~ 9,872,308원 | 9,899,775원 ~ 10,724,756원 | 10,686,650원 ~ 11,577,203원 |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세대에 속한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기준소득을 10%씩 완화 적용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 및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함.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26세대**

| 구 분 | 84A | 84A1 | 84B | 101 | 116 | 합계 |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5 | 5 | 6 | 7 | 3 | 26 |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및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자세한 사항 및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이내) : 39세대**

| 구분 | 84A | 84A1 | 84B | 101 | 116 | 합계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12 | 13 | 14 | - | - | 39 |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자

-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3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019년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0.2.20. 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 공급유형 | 구분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130% 이하 | 7,221,478원 | 8,094,245원 | 9,019,860원 | 9,872,308원 | 10,724,756원 | 11,577,203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130%}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
|---|---|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및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청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함.<br>※「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청주시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br>(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br>-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br>- 세대주일 것<br>-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br>-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청약신청 유의사항 |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br>•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br>•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br>•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br>•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br>•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br>[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br>•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br>•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br>(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 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br>•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br>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br>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br>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br>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br>(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 ▣ 일반공급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 구분 | 순위 | 신청구분 | 신 청 자 격 |
|---|---|---|---|
| 민영주 | 1순위 | 전용면적 85㎡ | • 가점제 75% / 추첨제 25%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br>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의 세대주 |

| | | | |
|---|---|---|---|
| 택 | | 이하 |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의 세대주<br>•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br>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br>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br>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b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br>•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br>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br>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br>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br>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 | 전용 면적 85㎡ 초과 | • 가점제 30% 적용, 추첨제 70% 적용<br>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의 세대주<br>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의 세대주<br>•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br>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br>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br>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b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br>•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br>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br>2)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br>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 | 청약 제한 대상자 |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 됩니다.<br>1) 세대주가 아닌 자.<br>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br>3) 2주택(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 | | | |
|---|---|---|---|
| | | | 4)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미만, 면적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자. |
| | 2 순위 | 전 주택형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 | | 청약 제한 대상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2순위 청약 불가.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 구 분 | 청주시 및 충청북도(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 모든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 구 분 | 내 용 |
|---|---|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br>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br>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br>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br>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 외국인 직계존속<br>-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br>※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br>-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br>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 | |
|---|---|
| |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 0 | 8년이상 ~ 9년미만 | 18 | ■ 주민등록표등본<br>(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br>■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br>■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br>※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 | | 1년 미만 | 2 | 9년이상 ~ 10년미만 | 20 | |
| | | 1년이상 ~ 2년미만 | 4 | 10년이상 ~ 11년미만 | 22 | |
| | | 2년이상 ~ 3년미만 | 6 | 11년이상 ~ 12년미만 | 24 | |
| | | 3년이상 ~ 4년미만 | 8 | 12년이상 ~ 13년미만 | 26 | |
| | | 4년이상 ~ 5년미만 | 10 | 13년이상 ~ 14년미만 | 28 | |
| | | 5년이상 ~ 6년미만 | 12 | 14년이상 ~ 15년미만 | 30 | |
| | | 6년이상 ~ 7년미만 | 14 | 15년이상 | 32 | |
| | | 7년이상 ~ 8년미만 | 16 | |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등·초본<br>■ 가족관계증명서<br>■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br>(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br>(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br>※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이상 ~ 9년미만 | 10 | ■ 청약통장<br>(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 | | 6개월 이상 ~ 1년미만 | 2 | 9년이상 ~ 10년미만 | 11 | |
| | | 1년이상 ~ 2년미만 | 3 | 10년이상 ~ 11년미만 | 12 | |
| | | 2년이상 ~ 3년미만 | 4 | 11년이상 ~ 12년미만 | 13 | |
| | | 3년이상 ~ 4년미만 | 5 | 12년이상 ~ 13년미만 | 14 | |
| | | 4년이상 ~ 5년미만 | 6 | 13년이상 ~ 14년미만 | 15 | |
| | | 5년이상 ~ 6년미만 | 7 | 14년이상 ~ 15년미만 | 16 | |
| | | 6년이상 ~ 7년미만 | 8 | 15년이상 | 17 | |
| | | 7년이상 ~ 8년미만 | 9 |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 · 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 · 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 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 현재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단, 2007.9.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9.1.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9.1.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으로 한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Ⅳ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2020.12.28(월)<br>(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br>(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br>• 사업주체 견본주택 |
| 일반공급 | 1순위(해당지역) | 2020.12.29(화) 08:00~17:3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 1순위(기타지역) | 2020.12.30(수) 08:00~17:30 | | |
| | 2순위 | 2020.12.31(목) 08:00~17:30 | |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청약신청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셔야 함)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어 청약하시기 바람.(유효한 공인인증서를 이미 소유하신 고객은 추가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청약접수일 전에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고객께서는 미리 갱신 발급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구비사항</th></tr>
<tr><td rowspan="2">일반<br>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br>·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br>·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br>※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제3자 대리신청 시<br>추가사항<br>(배우자 포함)</td><td>·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tr><th>인감증명 방식</th><th>본인서명확인 방식</th></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br>-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br>-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수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br>-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br>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br>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난 후 청약 바람.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요청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부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수시로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치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신청 요건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시어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점수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음.
- 청약신청 시 신청자격 착오기재 등(수정 불가)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 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 접수하시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주택형과 약식표기형을 비교 및 확인 후 청약신청하셔야 하며,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가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형<br>(주거전용 면적기준) | 약식표기 |
|---|---|
| 084.8743 | 84A |
| 084.7993 | 84A1 |
| 084.8833 | 84B |
| 101.5539 | 101 |
| 116.9845 | 116 |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주택청약시스템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이용하여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자격검증서류 제출

### ▣ 일정 및 계약장소

|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체결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br>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 일시: 2021.01.07.(목)<br>• 확인방법<br>-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br>또는 스마트폰 청약홈앱에서 개별조회<b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시<br>- 2021.01.19.(화) ~ 2021.01.22.(금) (10:00~16:00)<br>• 장소 : 당사 견본주택<br>(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251-1번지 일원) |
| 일반공급 | 1순위 | | |
| | 2순위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당사가 정한 기간(통보일로부터 7일) 내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한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함. (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 저축 재사용 불가)

### ▣ 계약체결 전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및 서류심사

| 구 분 | 내 용 |
|---|---|
| 서류 제출기간(기한) | 2021.01.08(금)~2021.01.17(일) |
| 대상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1, 2순위)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전원 |
| 제출장소 | 당사 견본주택(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251-1번지 일원) |
|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20.12.18.)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주택의 공급계약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전 당첨자 서류 제출기한 내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아래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단, 특별공급 인터넷 신청으로 당첨되신 분의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신청자격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서류 심사를 통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에 유념하시기 바람.

※ 청약 접수건에 따라 일정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아래 자격검증 제출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요건,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 등)
-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이 발생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람.

**▣ 특별공급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예비입주자)**

**- 견본주택 방문 청약자는 신청 시에 제출, 인터넷 청약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 서류 (기관추천 포함) | O |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본인 | · 접수 장소에 비치 : 인터넷청약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O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O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 | O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 O |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www.applyhome.co.kr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br>※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O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O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O | 복무확인서 | 본인 |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 |
| | O | | 출입국사실증명원 ※기록대조일을 발급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12.18.)로,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b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청약불가 |
| | | O | | 직계존속 |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br>*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O | | 직계비속 |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br>*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 다자녀 특별공급 | | O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O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O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
| |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세대주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 |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 |
|---|---|---|---|---|---|
|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O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
| | O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br>(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 | O | | 소득증빙서류 |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br>(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소득입증서류) |
| | | O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
| | | O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O | 기본증명서 | 자녀 |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
|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 |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br>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O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비속 |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br>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O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O | |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 직계존속 |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자녀 | · 본인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br>·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O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직계비속 | ·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9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O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br>※ 건강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보험증 제출 가능 |
| | O |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
| | O | | 소득증빙 서류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청약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의 사람 포함) 전원임.) (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입증 서류 참조) |
| | O | |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 본인 | ·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입증 서류(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입증 서류 참조) |

| | | | | | |
|---|---|---|---|---|---|
| | | O | 수급자 증명서 |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여,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한다)자 |
| |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 비사업자의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는자 | | O | 무주택 소명서류 | 해당 주택 |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br>·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br>·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br>·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O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서류 | - |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O |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O | | 인감도장 | 청약자 |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 O | | 위임장 | 청약자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O | |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일반공급 | O | | 신분증 | 계약자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br>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
| | O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O |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O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
| | | O | |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상세”**로 발급) |
| | | O | | 직계비속 |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

| | | | | | |
|---|---|---|---|---|---|
| | | | | |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상세"**로 발급) |
| | O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O | | 직계존속 | · 피부양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피부양과 주민등록표상에 분리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 |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직계비속 | ·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br>·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 | O | | 출입국사실증명원<br>※기록대조일을 발급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12.18.)로,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b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청약불가 |
| | | O | | 직계존속 |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br>*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O | | 직계비속 |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br>*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O | 복무확인서 | 계약자(장기복무군인) |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br>-「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 (다만,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
| 일반공급<br>(추첨제 ) | O | | 서약서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8항2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구성원이 추첨제 당첨 시 기존 주택 처분서약<br>· 견본주택 비치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br>(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O | 무주택 소명서류 | -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br>·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br>·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br>·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O | 당첨사실 소명서류 | - |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아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 재직증명서(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br>-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br>[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 해당직장<br>- 세무서 |

| | | | |
|---|---|---|---|
| | 신규취업자 / 금년도전직자 |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 | 전년도전직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원본, 재직증명서 |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br>(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 해당직장 |
| 자영<br>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 신규사업자 |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 국민연금관리공단<br>- 세무서 |
| | 법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br>-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 세무서<br>-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무직자 | |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 접수장소 |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하여야 함.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table>
<tr><th>종 류</th><th>세부내역</th></tr>
<tr><td>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td><td>- 세대주, 세대원, 주소지, 거주기간 등 확인<br>-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자의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도 추가 제출</td></tr>
<tr><td>가족관계 증명서</td><td>-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td></tr>
<tr><td>청약통장가입 확인서</td><td>-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td></tr>
<tr><td>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td><td>-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td></tr>
<tr><td>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br>(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아래의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td><td>
<table>
<tr><th>해당자격</th><th>제출서류</th><th>발급처</th></tr>
<tr><td>근로자</td><td>- 재직증명서<br>-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td><td>- 해당직장<br>- 세무서</td></tr>
<tr><td>자영업자</td><td>- 사업자등록증 사본<br>-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td><td>- 세무서</td></tr>
</table>
</td></tr>
<tr><td>소득입증 서류 목록<br>(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td><td>
<table>
<tr><th colspan="2">해당자격</th><th>제출서류</th><th>발급처</th></tr>
<tr><td rowspan="2">근로자</td><td>일반근로자</td><td>-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br>- 재직증명서</td><td>- 해당직장<br>- 세무서</td></tr>
<tr><td>신규취업자</td><td>-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br>- 재직증명서</td><td>- 해당직장</td></tr>
</table>
</td></tr>
</table>

| | | | |
|---|---|---|---|
| 자영업자 | 일반(간이)과세자<br>면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소득금액 증명<br>- 사업자 등록증 | - 세무서 |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 신규사업자 |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br>- 사업자등록증 | - 국민연금공단<br>- 세무서 |
| | 법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br>- 법인등기부등본 | - 세무서 |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br>-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해당회사의 급여명세표 | - 세무서<br>-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수급자증명서 | - 동사무소 |
| 비정규직 근로자<br>일용직 근로자 | |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소득지급명세서 | - 해당직장 |
| 무직자 | |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 접수장소 |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하여야 함.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58조 제3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중복청약 및 이중당첨자 처리기준**

-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여부 미확정으로 일반공급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당첨 시 특별공급만 인정함.
-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신청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 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이후 당첨된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 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 · 호와 미계약 동 · 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됨.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 · 호와 미계약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 · 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홈페이지(http://hdc.i-park.com/gagyeong5)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
| 이용기간 | | 2021.01.07.(목) ~ 2021.01.16.(토) (10일간) |
| 인터넷 |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br>-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1.01.07(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구 분 | 선 정 방 법 |
|---|---|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br>•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br>•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br>•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br>•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 |

| | |
|---|---|
| | 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br>-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br>*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br>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br>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br>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br>•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br>•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br>•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br>•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br>-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br>*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br>-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br>•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 유의사항 |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br>•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br>•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br>•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br>•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br>•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br>•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br>•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br>•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br>•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br>•「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br>•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호(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VI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장소 | 문의전화 | 비고 |
|---|---|---|---|
| 2021.01.19.(화) ~ 2021.01.22.(금) 4일간, (10:00~16:00) | 당사 견본주택(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251-1번지) | 043-239-7505 |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함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서류제출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본인 계약 시 | O |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 O | | 신분증(주민등록증) |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O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br>※ 인감증명서는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O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 해당자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O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소명자료) | | |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 | | |
| 대리인 계약 시 | O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계약자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 | O | | 주민등록증, 인장 | 대리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br>(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18.**)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수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됩니다.

**▣ 분양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 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계약금 1차 | 국민은행 | 630901-04-147653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좌측 명시된 계좌로 계약금 1차 납부 |
| 계약금 2차 / 중도금 / 잔금 | 국민은행 | 630901-04-147653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좌측 계좌가 모계좌이며, 실제 납부는 계약체결 후 세대별로 부여된 가상계좌에 입금 |

- 상기 입금계좌는 분양금액 납부계좌임(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분양금액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비고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지정된 계약금(1, 2차),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 및 가상계좌(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좌부여)로 입금하시길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함)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지정된 계약기간에 1차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중 2차 계약금부터 잔금까지는 공급계약 체결 시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납부일에 입금하여야 함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1차 계약금 납입 이후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가 계약체결 시 별도 생성되어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이오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501동 1502호 계약자 → '5011502홍길동' / 503동 703호 계약자 → '5030703홍길동')

**▣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 신청 및 계약 체결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 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2.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 동안 청약 당첨이 제한 됨.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

1.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7일)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빛공해(단지내 도로 설치로 인한 자동차 전조등 등을 포함한다.),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주변도로 비산분진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봄.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인승,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음.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기간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2011.07.29. 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 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기준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조정지역인 청주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제3조에 의거(2020.10.27. 시행) 조정지역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여기서 정하지 않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를 준용함.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대행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 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2020.02.20.「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및 2020.06.17.「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조치」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금융위원회,3.2시행)에 의거하여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적용됨에 따라 [구간① : 9억원 이하 50% / 구간② : 9억원 초과 30%]가 적용됩니다.
• 또한 2020.07.01.부터 시행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후속조치 시행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로 중도금 대출 신청 시 6개월 내 전입의무가 부과됨.(중도금 대출의 경우 6개월 산정 시점은 신규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이며,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위 사항은 정부의 관련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관련법률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 여부(다주택자 규제, 금융신용불량거래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대상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께서 확인하신 후 대출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나,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 및 대출취급상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 대출은행과 대출협약에 따라 공급대금의 10% 이상 납부 이후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가능하나, 정부의 관련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관련법률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 여부(다주택자 규제, 금융신용불량거래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대상자 등)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한도축소 등의 사유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고, 계약자 자기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 접수 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신용불량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대출취급상품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대출에 필요한 주택구입자금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택구입자금보증서의 발급가능 여부에 따라 대출알선조건이 변경 또는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음.
• 대출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해 입주시점의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상환조건 등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음.
• 당사는 대출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당사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진행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날짜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 분양계약해지 요구, 중도금 대출 신청 거부, 발코니확장비 및

추가선택 품목 대금 납부 거부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대출은행과의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정보제공 미동의에 따른 대출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에 책임지지 않음)

•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당사 및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서류의 미제출시 당사는 대출을 알선 하지 않음.

• 당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과 관련하여 중도금 대출금 이자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하는 입주지정 개시월의 이자납입일(입주지정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 등 변경된 입주지정 개시월의 이자납입일 기준)까지는 사업주체가 선납부(대납)하고(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입주지정 개시월의 이자납입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입주예정자(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선납부(대납)한 이자후불제 관련 대출 이자 전액은 계약자가 잔금 납부 시 일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정한 부담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대출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함.

**▣ 견본주택 유의사항**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미확장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 등은 당사에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및 발주에 의한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핸드레일, 현관 방화문, 가구류, 바닥재, 창호(향후 풍압테스트에 따라 조정)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 및 색상,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되며, 이 경우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이므로 사업주체에 문의하여 영상을 볼 수 있음. (다만, 내부 촬영 동영상의 복사, 반출, 캡쳐 등을 통한 외부 유출은 절대 불가하며, 촬영방식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시공시 설계도서 및 소방관련 법령에 맞추어 설치됨.(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견본주택 및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이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경우(경미한 변경 발생)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이를 추후 통보하도록 할 예정임.

**▣ 입주자 사전방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 가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입주 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 및 유의사항**

- 입주예정일 : 2023년 02월 예정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하며,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 이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임
-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의 단축을 요청할 경우 등의 사유로 입주예정일을 사전공지를 통해 앞당길 수 있으며 납기일이 미도래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금액(중도금 및 잔금),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계약금, 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계약금,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함.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음.
- 입주시 시행 및 시공사는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2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2년간(필요에 따라 연장가능)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장소로 시행 및 시공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피트니스, G/X,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주민운동시설은 2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일부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은 조경 및 시설물 계획 변경에 따라 견본주택내 모형도 및 CG와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하자보수)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됨.

## Ⅶ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원, VAT포함)

| 구 분 | 발코니 확장금액 | 계약금(10%) | 잔 금(90%) |
|---|---|---|---|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84A | 11,500,000 | 1,150,000 | 10,350,000 |
| 84A1 | 12,500,000 | 1,250,000 | 11,250,000 |
| 84B | 11,000,000 | 1,100,000 | 9,900,000 |
| 101 | 14,500,000 | 1,450,000 | 13,050,000 |
| 116 | 15,500,000 | 1,550,000 | 13,950,000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요망.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 (예시 - 501동 1502호 계약자 → '5011502홍길동' / 503동 703호 계약자 → '5030703홍길동')

| 구 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 고 |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 | | | 추후 별도 통지예정 |

◎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05.12.02 개정 시행)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달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고,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미포함 되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업체의 부도, 파산, 공사포기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

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칸막이의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 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 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는 별도로 부담) 확장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 후 공개된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샤시는 단창으로 설치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의 위치 ,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및 천장면 돌출, 우물천정 사이즈 및 높이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일부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확장비용은 외부발코니 샤시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플러스 옵션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가능)

■ 가전제품 판매가격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평형 | 품목 | 구분 | | 제조사 | 가격 | 비고 |
|---|---|---|---|---|---|---|
| 공통 | 빌트인 냉장고 | RR39T7695AP+RZ32T7665AP+RZ24T5660AP | 냉장+냉동+변온 | 삼성 | 4,500,000 | |
| | | BIS냉장고(S711SI24B) | 가구패널없음 | LG | 5,750,000 | |
| | | BIS냉장고(S691SI34BS2) | 가구패널없음 | LG | 7,650,000 | |
| | 빌트인 김치 냉장고 | K221PR14BR | 패널포함 | LG | 1,250,000 | |
| | 식기세척기 | DUB22SB | - | LG | 1,190,000 | |
| | | DWA-81R0D | - | SK매직 | 1,090,000 | |
| | | DWA-76U5B | - | SK매직 | 780,000 | |
| 101 | 빌트인 콤비 냉장고 | M272PR34BL/R | 패널포함 | LG | 820,000 | |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제공하는 가전제품 옵션 목록은 추후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구 형태 및 가전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옵션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가구 판매가격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평형 | 품목 | 구분 | 제조사 | 가격 | 비고 |
|---|---|---|---|---|---|
| 84A | 팬트리 | 주방가구 일반형 | - | 2,840,000 | |
| | | 주방가구 고급형 | - | 6,380,000 | |
| | 현관 중문 | 원슬라이딩 | - | 1,080,000 | |
| | 주방 엔지니어드스톤(벽) | 확장기본형 | - | 1,330,000 | |
| | | 수납강화형 | - | 1,430,000 | |
| | 주방 세라믹타일(벽+상판) | 확장기본형 | - | 4,580,000 | |
| | | 수납강화형 | - | 4,670,000 | |
| | 거실 아트월 세라믹 | 거실벽 | - | 1,730,000 | |
| | 안방 붙박이장 | 스타일러 포함 | - | 5,700,000 | |
| | | 스타일러 제외 | - | 4,480,000 | |
| | 음성인식시스템 | 월패드1+에너지미터4 | - | 390,000 | |
| | 간접조명 | | - | 950,000 | |

| | | | | | |
|---|---|---|---|---|---|
| | 목문 푸시플 도어락 | | - | 120,000 | |
| | 유리월 | 블라인드 제외 | - | 1,210,000 | |
| 84A1 | 팬트리 | 주방가구 일반형 | - | 2,840,000 | |
| | | 주방가구 고급형 | - | 6,380,000 | |
| | 현관 중문 | 원슬라이딩 | - | 1,080,000 | |
| | 주방 엔지니어드스톤(벽) | 확장기본형 | - | 1,330,000 | |
| | | 수납강화형 | - | 1,430,000 | |
| | 주방 세라믹타일(벽+상판) | 확장기본형 | - | 4,580,000 | |
| | | 수납강화형 | - | 4,670,000 | |
| | 거실 아트월 세라믹 | 거실벽 | - | 1,730,000 | |
| | 음성인식시스템 | 월패드1+에너지미터3 | - | 330,000 | |
| | 간접조명 | | - | 950,000 | |
| | 목문 푸시플 도어락 | | - | 120,000 | |
| 84B | 팬트리 | 주방가구 고급형 | - | 5,450,000 | |
| | 현관 중문 | 원슬라이딩 | - | 1,080,000 | |
| | 주방 엔지니어드스톤(벽) | 확장기본형 | - | 1,530,000 | |
| | | 수납강화형 | - | 1,730,000 | |
| | 주방 세라믹타일(벽+상판) | 확장기본형 | - | 4,790,000 | |
| | | 수납강화형 | - | 5,210,000 | |
| | 거실 아트월 세라믹 | 거실벽 | - | 1,680,000 | |
| | 작은방 붙박이장 | 화장대 추가 | - | 950,000 | |
| | 음성인식시스템 | 월패드1 + 에너지미터4 | - | 390,000 | |
| | 간접조명 | | - | 1,010,000 | |
| | 목문 푸시플 도어락 | | - | 120,000 | |
| 101 | 팬트리 | 주방가구 일반형 | - | 5,530,000 | |
| | | 주방가구 고급형 | - | 9,020,000 | |
| | 현관 중문 | 원슬라이딩 | - | 1,080,000 | |
| | 주방 엔지니어드스톤(벽) | 확장기본형 | - | 1,290,000 | |
| | | 히든주방형 | - | 2,280,000 | |
| | 주방 세라믹타일(벽+상판) | 확장기본형 | - | 4,470,000 | |
| | | 히든주방형 | - | 7,280,000 | |
| | 거실 아트월 세라믹 | 거실벽 | - | 2,170,000 | |
| | 안방 붙박이장 | 스타일러 포함 | - | 5,700,000 | |
| | | 스타일러 제외 | - | 4,480,000 | |
| | 작은방 붙박이장 | 화장대 추가 | - | 950,000 | |
| | 드레스룸 고급화 | 스타일러 제외 | - | 8,200,000 | |
| | 슬라이딩도어 | 침실2 | - | 1,540,000 | |

| | | | | | |
|---|---|---|---|---|---|
| | 음성인식시스템 | 월패드1+에너지미터5 | - | 460,000 | |
| | 간접조명 | | - | 1,080,000 | |
| | 목문 푸시플 도어락 | | - | 120,000 | |
| | 유리월 | 블라인드 제외 | - | 2,160,000 | |
| 116 | 팬트리 | 주방가구 일반형 | - | 6,050,000 | |
| | | 주방가구 고급형 | - | 9,520,000 | |
| | 현관 중문 | 원슬라이딩 | - | 1,080,000 | |
| | 주방 엔지니어드스톤(벽) | 확장기본형 | - | 1,380,000 | |
| | | 와이드다이닝형 | - | 1,430,000 | |
| | 주방 세라믹타일(벽+상판) | 확장기본형 | - | 4,530,000 | |
| | | 와이드다이닝형 | - | 6,310,000 | |
| | 거실 아트월 세라믹 | 거실벽 | - | 4,120,000 | |
| | 안방 붙박이장 | 스타일러 포함 | - | 5,830,000 | |
| | | 스타일러 제외 | - | 4,610,000 | |
| | 드레스룸 고급화 | 확장기본형(스타일러 제외) | - | 9,710,000 | |
| | | 무상선택형(안방출입구) / (스타일러 제외) | - | 9,900,000 | |
| | 슬라이딩도어 | 안방 알파룸 | - | 1,760,000 | |
| | 음성인식시스템 | 월패드1 + 에너지미터4 | - | 390,000 | |
| | 간접조명 | | - | 1,090,000 | |
| | 목문 푸시플 도어락 | | - | 150,000 | |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옵션 미선택 시,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벽타일 등)와 관련하여서는 견본주택에서 실 마감재 샘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격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평형 | 구분 | | 구성 | 판 매 가 | 비 고 |
|---|---|---|---|---|---|
| 84A, 84A1, 84B | 일반 GRILL TYPE | 전체(6개소)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 8,340,000 | 제조사 : LG |
| | | 기본(3개소) | 거실+주방+안방 | 4,390,000 | |
| | 공기청정 GRILL TYPE | 전체(6개소)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 9,920,000 | |
| | | 기본(3개소) | 거실+주방+안방 | 5,190,000 | |
| 101 | 일반 GRILL TYPE | 전체(6개소)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 8,730,000 | |
| | | 기본(3개소) | 거실+주방+안방 | 4,470,000 | |
| | 공기청정 GRILL TYPE | 전체(6개소)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 10,310,000 | |
| | | 기본(3개소) | 거실+주방+안방 | 5,260,000 | |
| 116 | 일반 GRILL TYPE | 전체(7개소)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1+알파룸2 | 10,730,000 | |
| | | 기본(3개소) | 거실+주방+안방 | 4,930,000 | |
| | 공기청정 GRILL TYPE | 전체(7개소)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1+알파룸2 | 12,580,000 | |
| | | 기본(3개소) | 거실+주방+안방 | 5,720,000 | |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 카세트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본 설치 품목인 에어컨냉매 매립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미설치 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확장 시에만 옵션선택이 가능하며 실내기의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별도 냉매 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별도 냉매배관 및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 품 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
|---|---|---|
| 문 | 목재문(문틀, 문선, 문짝, 도어록 및 경첩등 하드웨어 일체) | 발코니내부 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
| 바닥 |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 벽 |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비닐쉬트 및 벽패널류 등), 발코니, 실외기실, 신발장, 화장대(상판 및 거울포함), 반침장, 재료분리대(욕실포함) |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
| 천장 |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마감, 발코니천장도장 | 천장틀 위 석고보드 마감 |
| 욕실 | 천장, 타일(바닥,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수전 및 헤드, 수전 등), 샤워부스, 욕실악세서리 일체, 욕실장, 바닥배수구커버(트렌치 포함), 욕실환풍기 | 액체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
|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쿡탑 등 주방가전 일체 | 소방검사 관련 후드, 주방 배기덕트 |
| 조명기구 | 부착/매립/거치형 조명등기구(간접조명포함,) 욕실매입등 |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 84A | 84A1 | 84B | 101 | 116 |
|---|---|---|---|---|---|
| 마이너스옵션금액 | 27,302,000 | 27,362,000 | 26,922,000 | 31,648,000 | 35,403,000 |

**◎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 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마이너스 옵션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부분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 및 추가 선택품목 옵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분양 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입주지정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 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시공 시 사업주체에서 시공한 소방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스마트 감성조명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으며, 홈네트워크기기 및 배선기구 디자인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 자재(대리석 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 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잔금 납부 시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합니다.

## Ⅷ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반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09. 04. 01)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 되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에 대해서 계약을 하실 경우 카달로그 또는 이미지는 실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는 84A형, 101형, 116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달로그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견본주택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제품 및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동가 등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목, 옵션 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목은 설치되지 않고, 플러스 옵션 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 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목(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 부분, 카달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설계 시 동선의 개선 및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본 공사 시에도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외부시설물,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 품목이나 기본 품목 등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 성능의 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84A형, 101형, 116형에는 주방 유상옵션형으로 건립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기본형, 선택형 평면 및 마감재를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84A형 주방벽에 설치 된 인조석(엔지니어드스톤)은 유상옵션 품목입니다. 계약자는  계약전에 기본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84A형 침실2에 설치 된 유리월은 유상옵션 품목입니다. 계약자는 계약전에 기본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101형 안방에 설치 된 슬라이딩 붙박이장은 유상옵션 품목입니다. 계약자는 계약전에 기본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101형 침실2에 설치 된 유리월 및 슬라이딩도어는 유상옵션 품목입니다. 계약자는 계약전에 기본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101형, 116형 주방 상판 및 벽에 설치 된 세라믹타일은 유상옵션 품목입니다. 계약자는 계약전에 기본형 마감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116형 드레스룸에 설치 된 시스템가구, 붙박이장 아일랜드장 및 슬라이딩도어는 유상옵션 품목입니다. 계약자는 계약전에 기본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116형 알파룸에 설치 된 슬라이딩도어는 유상옵션 품목입니다. 계약자는 계약전에 기본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 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 동영상 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의 내부 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달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도로 내 시설(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교통표시 등), 기타 공공시설(학교 등), 개발사업, 주변환경, 교통여건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 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제작 및 배포된 홍보물(리플렛, 전단지, CG 이미지컷, 현수막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

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지 남측, 서측에는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달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으므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포장, 단지 내 시설물, 어린이 놀이터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변경 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합니다.
- 본 아파트가 속한 청주 가경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평가 내용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과 아파트의 준공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업구역이 속해있는 청주 가경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인근 사업추진으로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등의 개설로 인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학교 및 각종시설 등은 미확정 상태로 토지이용계획,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이 상이할 경우, 정산 처리하며 이에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 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는 청주 가경서부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속한 대지로서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대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며, 관계기관의 업무처리 과정 및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동주택 주택관리사무소 입구게시판 및 각 공동주택출입문 게시판 등에 공고 예정입니다.
- 상기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아파트는 당 아파트가 속해 있는 청주 가경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인근 청주 가경홍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주 가경서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주 가경서현2지구 도시개발사업 등과 동시 개발되며, 초등학생은 가칭)서현2초 배치예정이나 가칭)서현2초 설립 이전에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될 경우 인근학교에 임시배치될 예정입니다.
- 학생배치와 관련하여 중학생은 '청주제3중학교군' 분산배치될 예정입니다.
- 청주 가경홍골지구, 가경서현지구, 가경서현2지구, 가경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해당 지역 전체 개발사업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학교용지 확보, 기존학교 증축 등 변화되는 여건에 따라

당 아파트 학생배치에 변동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가 포함된 청주 가경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인근 가경홍골지구 도시개발사업, 가경서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가경서현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일부 공사 완료 및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해당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당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북동측으로 청주 가경IPARK 3단지, 청주 가경IPARK 4단지, 가경자이(입주 20년 11월, 변동 가능)가 공사중에 있으며 동측으로 홍골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청주가경홍골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니 이로 인해 변화되는 여건 및 해당 단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길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당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조경시설물, 식재 등의 위치가 이동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내부의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성능/상품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동측 혹은 주변에 개발사업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변화되는 여건 및 해당 단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시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길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당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경서부지구 개발사업 내/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석남천 하천정비사업은 모집공고일 기준 개발계획 및 도면에서 추가적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해당 단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시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길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당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채광창, 쓰레기 분리수거장, 실외기, 상가, 관리동, 외부계단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24)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제곱미터(㎡)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며(면적산출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소수4째자리(소수5째자리에서 버림)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대로 0.01㎡ 만큼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이에 따라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및 상호정산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피트니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가칭)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거공용부분인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옥상, 전실 및 홀 등은 주거공용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전용화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

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담장개방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민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 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1,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본 사업지구 인근에 중부고속도로가 접하여 환경피해(소음 등)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또한, 본 산업단지 인근 고속도로는 장래에 확장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확장공사 후 소음도가 확장공사 착수시점의 실측소음도(도로관리기관이 측정)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음 피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귀속하고, 별도의 구상금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 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기 납부한 분양대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행정명령, 기타 도시개발사업 미준공, 공부 미정리 등의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입주시기, 소유권 이전절차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첨부)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등) 및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각 단지별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하였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상층세대는 관계 법령에 의해 설계 및 시공되나, 기준층 세대 대비 추가 공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으며, 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 되었으며,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손끼임 방지장치를 입주 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옥상에 공용부 전력 공급을 위한 태양광 판넬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형태, 색상, 크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의 색상, 모양, 크기 및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설계관련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타일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 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호수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주차장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 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선홈통, 냉매박스, 실외기 배관,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액세서리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 공사 시 소방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설치됩니다.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되며, 욕실 및 발코니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조건 확인 후 계약체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개별난방 단지로써 취사용 및 난방용 가스는 도시가스에서 공급될 예정입니다.
• 보일러 가동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일러 및 보일러 가동을 위한 연도가 노출되어 가구 및 세탁기/건조기 등의 배치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일러는 세대 면적에 따른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가스계량기 및 보일러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본 아파트 세대 내 조명기구와 스위치는 직류 전원 공급에 의해 동작하는 방식으로 조명기구와 스위치 간 UTP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류전원용(AC) 조명기구와 스위치로의 교체가 불가하므로 계약자는 이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계약하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세대 내 공기감지센서(무선AP일체형)는 발코니 확장 시 기본설치 품목입니다.
- 인접한 각 동 및 인접한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 등을 위한 시설물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 환풍구 소음이나 바람에 일부 세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세탁기, 청소용 등), 보일러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차량통행로 유효높이는 관계법령에 의거 지하1층 2.7m, 지하2층 2.3m로 설계되어 있으며, 추후 실시계획 변경 등 인허가와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 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 및 램프 캐노피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승인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 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을 불리하게 할 수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높이, 색상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및 석재 뿜칠, 페인트와 몰딩이 시공된 경우,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공공장소인 휴게 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D/A(설비 환기구), 채광창, 쓰레기 분리수거장, 실외기,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고급 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PIT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 난간대 및 발코니 난간대의 디테일, 프레임 두께, 색상, 사이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1~2층(필로티 포함) 및 최상층은 세대 내 방범을 위하여 방범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주동 1층 로비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층 층고는 기준층과 달라 입면 및 창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동 필로티 내에는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창은 발코니 구조나 형태에 따라 창호 크기나 사양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에 설치된 비상승강기 승강장의 제연설비는 별도의 연도(스모크타워) 대신 승강로를 이용하여 소방관련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층의 엘리베이터 출입문 옆의 날개벽에 제연을 위한 그릴창이 설치됨에 따라 미관상 다소 불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경로당(노인정),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사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에어컨 실외기,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인해 일부 주변 세대는 소음 등 생활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허가로 인해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바람의 영향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가칭)'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 시설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 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 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 조경시설, 포장은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여건 등에 따라 규격, 수종,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면하는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위치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 및 중간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야간경관용 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전자파 영향 등이 발생하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502동, 503동, 506동, 508동 옥상층에는 옥외 안테나 및 이동통신중계장치가 설치되며 503동, 508동 지하1층 팬룸에는 이동통신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니 계약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설치 위치는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협의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동통신중계장치”의 설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영역으로 시공사의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동별 주차장 형평성을 배분하여 동선 계획이 되었으며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있고,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보안 및 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 및 난간의 모양 및 색, 색채 등),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벽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외부에 금속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는 경우, 인근 세대에 반사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Type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카달로그, 단지모형 및 기타 홍보물에 표현된 주변 현황은 현재 계획을 반영하여 표현하였으며, 향후에도 도시개발사업 등 기타 사항의 여건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렛,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CG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CG로 실제 시공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실제 시공 시 내부 레이아웃, 마감재, 장비 및 집기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시설의 규모 및 계획은 입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 및 삭제될 수 있으며, 향후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의 특성상 자연적인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결이 다를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견본주택과 색상, 디자인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타일류, 석재류(인조석, 천연석)의 시공 나누기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방,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
• 주방가구 상판은 인조대리석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내부 마감재(마루,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 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금속도어(현관, 실외기실 등)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재질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자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및 비틀림의 우려가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붙박이장 등)의 도장 제품이 설치된 경우 설치 후 시간 경과 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냉장고는 유상옵션품목이며, 미선택 시 냉장고 (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일부 돌출 될 수 있습니다.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대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텐박스 깊이,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바닥, 벽, 천장부분에 가구(주방·침실·욕실 가구,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 등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원활한 시공 진행을 위하여 최종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거실 및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된 모든 창호의 크기 및 위치, 하부턱 높이, 난간대 설치 여부는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된 모든 창호와 난간대의 제품사양 및 형태, 높이, 재질, 색상, 열림 방식 및 방향은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 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 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리벽은 옵션 품목이며, 선택하지 않을 시 일반 벽체로 시공됩니다.
• 세대내 창호의 문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용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1)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함.
2)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 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3)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4)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주방가구, 욕실가구, 현관 수납장, 침실 붙박이장 뒷벽 및 아래에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건축 마감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하부에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되며, 실 시공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에는 에어컨 냉매배관이 2개소(거실, 안방)에만 설치되며, 침실1, 2, 알파룸, 주방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세대 제외).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 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법」에 따라 일부 층의 발코니 등에 피난기구(완강기)가 시공됩니다.
• 층 단차로 인한 공용시설의 지붕은 개인 이용이 불가합니다.
• 차량출입구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차량조명,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502동 하부, 504동 측벽에 보행자 통행을 위한 외부 계단이 설치되어 저층세대에 소음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501동, 503동 인근에 주민공동시설 실외기실이 설치되어 저층세대에 소음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당 단지는 지하주차장이 2개층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각 층에서 해당 동 ELEV.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당 아파트 단지의 주차대수는 1,389 대로(세대당 약1.5대) 일반주차보다 규격이 작은 경차주차면이 94대 포함되어 있습니다.(경차주차구획규격 폭 2.0m × 깊이 3.6m)
• 본 단지는 통상적으로 세대 내 설치되는 '대피공간'을 두지 않고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통하여 아래층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니, 계약 시 필히 확인하시고 탈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설치하거나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 1층 필로티 및 외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층고는 기준층과 달라 입면 및 창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부 천장고는 기준층과 동일합니다.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옵션품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진출입로 교량 난간의 색채, 형태 등은 모형 및 광고 이미지, 현재 계획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 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24)을 준수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비확장형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발코니, 다용도실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내부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 평형, 동일 타입이라도 해당 동 · 호수에 따라 비확장 발코니 및 발코니 확장 구간의 크기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절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허가) 및 관리주체에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발코니 난간(투시형, 콘크리트난간)의 높이와 샤시 설치 높이는 실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 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에는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어 단지 공용전기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임의로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 태양광발전설비의 발전효율은 계절의 변화 및 설치방향, 먼지오염, 노후화 등에 따라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세대가 확장형을 선택하지 않고 인접세대에 발코니 확장 세대가 있을 경우 상호간의 안전한 차음성능 확보를 위해 콘크리트벽으로 구획이 되며 법적 단열성능을 만족하기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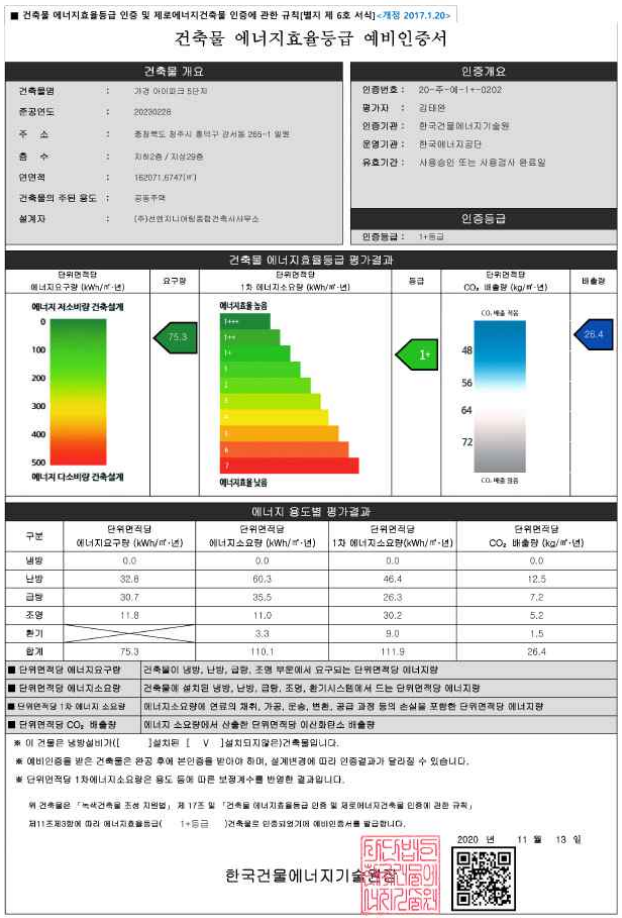
당해 세대 발코니에 단열과 조적벽이 시공되어 불가피하게 발코니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해당 사항이 표현된 도면을 사업승인도서에 표기하였으므로 향후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서비스면적이 줄어들더라도 전용 및 공급면적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반건식공법의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가 적용될 예정이며 여기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저감재는 와플구조형식으로 두께는 약 30~70mm이며 부분적으로 슬래브 바닥에서 떠있는 구조로 시공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 거실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거실과 안방 이외의 실에는 에어컨 설치 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 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환기 유니트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 안방 발코니 및 주방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보일러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 안방 발코니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화재 시 덮개를 열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시 대피를 위한 시설이므로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적치할 수 없습니다.
• 평상시 하향식 피난구 덮개를 밟거나 덮개 위로 물이 넘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세대 벽체 및 바닥 내부에는 전기, 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난방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셔야합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설비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옥상층 오배수 벤트로 인해 주변의 일부 세대에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서버 유지보수 비용은 준공 후 3년간 무상지원 됨. (단, IoT 및 기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단지내 홈네트워크 서버 인터넷회선비용은 준공 후 1년간 무상지원)

■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본 건축물은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 임

■ IoT 서비스
• HDC IoT서비스는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서비스 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 과금 예정입니다.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세대 내 설치된 조명, 난방 등의 상태 조회 및 제어가 가능하며, 공기청정 등 향후 IoT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춥니다.[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 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환기, 난방제어 등) 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SKT Smart(Home)과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 AP)가 설치되어야 합니다.(통신사 무관)]
•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SKT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IoT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HDC현대산업개발과 SKT의 사업정책에 따라 9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가경 아이파크 5단지 IoT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홈네트워크 서버 유지,보수,통신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함.
- 카카오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대 내에 무선 인터넷 환경(인터넷이 가능한 어느 사업자도 가능하며, 입주자 별도 가입 필요)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각 세대에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한 홈네트워크 기기제어(월패드 터치스크린 및 IPARK 스마트폰 전용 앱을 이용한 제어 범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를 제공하고 이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시부터 10년간 사용 가능하며, ㈜ 카카오의 플랫폼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일부 음성인식 월패드(챗봇기능은 기본사항임)는 유상으로 제공되고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 | | |
|---|---|---|
| 건축물명 | : | 가경 아이파크 5단지 |
| 준공연도 | : | 20230228 |
| 주 소 | :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265-1 일원 |
| 층 수 | : | 지하2층 / 지상29층 |
| 연면적 | : | 162071.5747(㎡) |
| 건축물의 주된 용도 | : | 공동주택 |
| 설계자 | : | (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인증개요

| | | |
|---|---|---|
| 인증번호 | : | 20-주-예-1+-0202 |
| 평가자 | : | 김태완 |
| 인증기관 | :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 운영기관 | : | 한국에너지공단 |
| 유효기간 | :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

인증등급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 요구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 등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 배출량 |
|---|---|---|---|---|---|
|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 0 100 200 300 400 500 에너지 다소비량 건축설계 | 75.3 | 에너지효율등급 1+++ 1++ 1+ 1 2 3 4 5 6 7 에너지효율낮음 | 1+ | $CO_2$ 배출 적음 48 56 64 72 $CO_2$ 배출 많음 | 26.4 |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 구분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
|---|---|---|---|---|
| 냉방 | 0.0 | 0.0 | 0.0 | 0.0 |
| 난방 | 32.8 | 60.3 | 46.4 | 12.5 |
| 급탕 | 30.7 | 35.5 | 26.3 | 7.2 |
| 조명 | 11.8 | 11.0 | 30.2 | 5.2 |
| 환기 | | 3.3 | 9.0 | 1.5 |
| 합계 | 75.3 | 110.1 | 111.9 | 26.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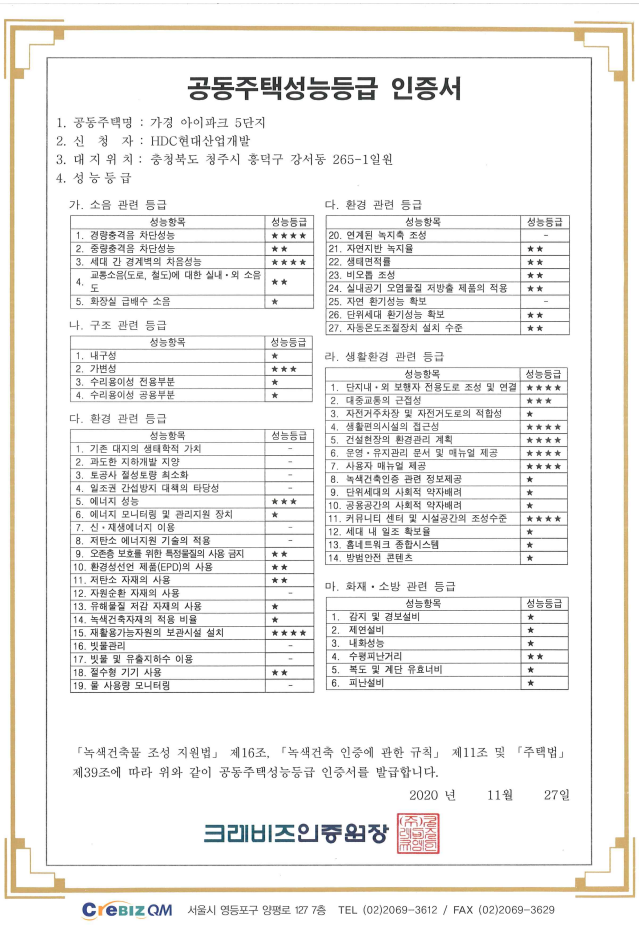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 V ]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0 년 11 월 13 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장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가경 아이파크 5단지
2. 신 청 자 : HDC현대산업개발
3.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265-1일원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 |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 |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 |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 |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 |

나. 구조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내구성 | ★ |
| 2. 가변성 | ★★★ |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 |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 |

다. 환경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 |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 |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 |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 |
| 5. 에너지 성능 | ★★★ |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 |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 |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 |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 |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 |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 |
| 12. 지원순환 자재의 사용 | - |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 |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 |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 |
| 16. 빗물관리 | - |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 |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 |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 |

다. 환경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 |
| 21. 자연지반 녹지율 | ★★ |
| 22. 생태면적률 | ★★ |
| 23. 비오톱 조성 | ★★ |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 |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 |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 |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 |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 |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 |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 |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 |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 |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 |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 |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 |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 |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 |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 |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 |
| 14. 방범안전 콘텐츠 | ★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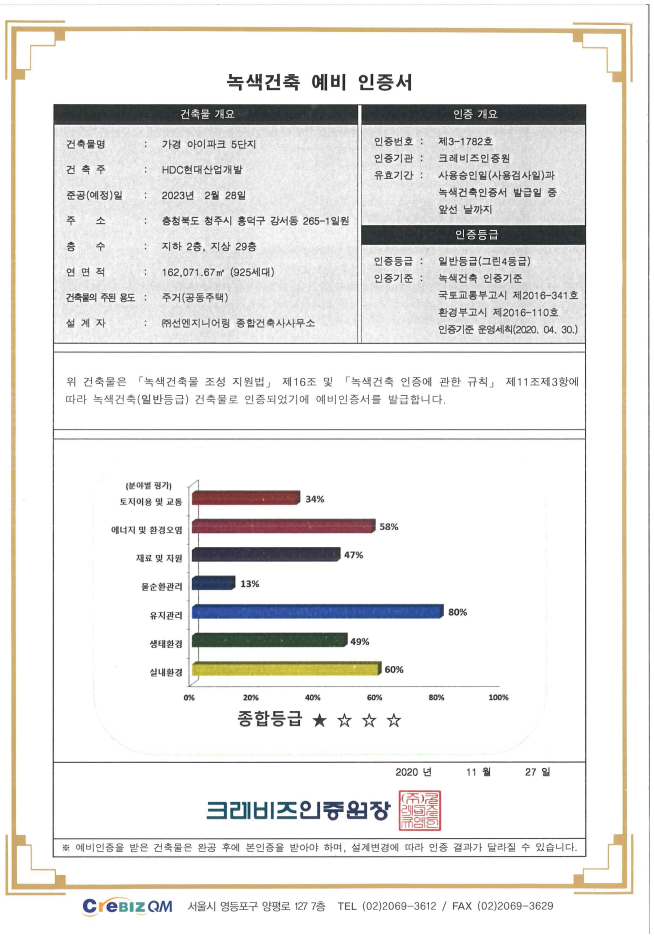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감지 및 경보설비 | ★ |
| 2. 제연설비 | ★ |
| 3. 내화성능 | ★ |
| 4. 수평피난거리 | ★★ |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 |
| 6. 피난설비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0 년 11월 27일

크레비즈인증원장

CREBIZQM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127 7층 TEL (02)2069-3612 / FAX (02)2069-3629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 | | |
|---|---|---|
| 건축물명 | : | 가경 아이파크 5단지 |
| 건 축 주 | : | HDC현대산업개발 |
| 준공(예정)일 | : | 2023년 2월 28일 |
| 주 소 | :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265-1일원 |
| 층 수 | : | 지하 2층, 지상 29층 |
| 연 면 적 | : | 162,071.67㎡ (925세대) |
| 건축물의 주된 용도 | : | 주거(공동주택) |
| 설 계 자 | : |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인증 개요

| | | |
|---|---|---|
| 인증번호 | : | 제3-1782호 |
| 인증기관 | : | 크레비즈인증원 |
| 유효기간 | :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

인증등급

| | | |
|---|---|---|
| 인증등급 | : | 일반등급(그린4등급) |
| 인증기준 | :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0. 04. 30.) |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 ☆ ☆

2020 년 11 월 27 일

크레비즈인증원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REBIZQM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127 7층 TEL (02)2069-3612 / FAX (02)2069-3629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1조의 제3항 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의무사항 |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 개수(필요시) |
|---|---|---|---|
| 고단열 고기밀 현관문 | | 적용 | 2등급 |
| 창의 기밀성능 (세대 직접외기 이중창) | | 적용 | 1등급 |
| 건축부문 설계기준(제7조 제3항 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제7조 제3항 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적용 | 개별보일러 적용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이하 전동지,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평균 효율이 KS규격의 1.12배 이상 제품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
| 전기부문 설계기준(제7조 제3항 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
| | 간선 및 동력설치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씩 설치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부속동 화장실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 |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 적용 |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정보통신,소방감리 |
|---|---|---|---|
| 회사명 |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나라기술단 |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 감리금액 | 2,913,625,000 | 572,864,000 | 651,200,000 |

▣ 분양보증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비고 |
|---|---|---|---|
| 01282020-101-0013800 | 217,208,600,000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사고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 분 | 사 업 주 체 | 시 공 회 사 |
|---|---|---|
| 상 호 | HDC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 HDC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9층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9층 |
| 법인등록번호 | 110111-6740008 | 110111-6740008 |

■ 분양대행사 : ㈜ JK파트너스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hdc.i-park.com/gagyeong5

■ 견본주택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251-1번지 일원

■ 분양문의 : ☎ (043) 239 - 7505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